

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143호(2000.06.09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91호(2009.07.23.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7-127호(2017.09.22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8-117호(2018.10.19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되고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22-35호(2022.03.04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
2.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에게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하고,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02-2148-2685) 및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02-395-0045)에 비치하여 보입니다.

2023년 12월 1일

종로구청장

가. 정비사업 명칭 :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1)위 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158-2번지 일대

2)면 적 : 15,589.30㎡(대지면적 13,252.60㎡, 정비기반시설 2,336.70㎡)

다. 정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1)성 명 :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정영규)

2)주 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42길 29(신영동)

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(변경있음)

마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18. 10. 19.

바. 사업시행계획(변경) 내용

-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

사. 사업시행계획(변경) 사유

- 기 사업시행기간내 사업 미완료에 따른 기간 연장

아. 건축물의 건축계획

- 1) 대지면적 : 13,252.60m²
- 2) 건 폐 율 : 37.06%
- 3) 용 적 률 : 151.50%
- 4) 층수·높이 : 지하3층, 지상4층 ~ 지상7층 / 최고높이 22.50m²
- 5) 연 면 적 : 35,566.19m²
- 6) 용 도 : 공동주택(아파트 199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

자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(199세대)

- 1) 세대당 전용면적 85m²이하 : 164세대(82.41%)
- 2) 세대당 전용면적 85m²초과 : 35세대(17.59%)

차.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

- 1) 도 로 : 1,601.10m²
- 2) 사회복지시설(어린이집) : 735.60m²
- 3) 토지 귀속 내용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97조(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)에 따라 도로, 사회복지시설 설치 후 무상 귀속

카. 관계 도서 :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및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사무실 비치. 끝.